

<표25> 범죄소년들의 보호/형사처분경력에 대한 위험요소의 회귀분석

	DF	자승합(SS)	평균자승합(MS)	F값	유의도	R ²
모 델	6	76.06	12.67	2.76	p<.05	0.10
오 차	147	674.04	4.58			
전 체	153	750.11				

	DF	회귀계수(b)	표준오차	t 값	유의도	표준회귀계수(β)
절 편	1	-0.34	1.50	-0.23	ns	0
부모 비동거 가정	1	0.32	0.35	0.91	ns	0.07
개인심리적 요인	1	0.03	0.01	1.71	ns	0.15
가정양육 요인	1	0.01	0.01	0.71	ns	0.06
부모 적응문제	1	0.00	0.05	0.10	ns	0.001
부모 경제력	1	0.06	0.13	0.45	ns	0.03
도래 비행문제	1	0.09	0.04	2.03	p<.05	0.17

* 음영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임.

4) 범죄유형과 사법복지욕구와의 관계

청소년의 범죄유형에 따라 분류심사 및 수용제도, 교정시설환경, 그리고 교정처우 프로그램 영역에서의 만족도 상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각 영역에 있어서 범죄유형집단에 따라 사법복지적 개선욕구는 어떠한 집단특성을 보이는가를 분석하였다.

범죄유형에 따른 네 개 집단간에 나타나는 현행 사법복지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범죄집단간 차이를 보기 위하여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개별집단비교를 위한 사후검증으로는 Turkey 쌍별비교를 하였다.

향후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사회복지적 욕구에 대한 분석은 범죄유형별로 각각 분류수용제도개선에 관한 욕구, 시설개선에 관한 욕구,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욕구의 구체적 내용과약을 상호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범죄유형별로 각 문항에 대한 빈도표를 산출하였다.

(1) 현행 사법복지 처우에 관한 만족도

- 분류심사-처우 만족도 : 그저그렇다, 대체로 반영
- 시설내 자율성 만족도: 현상태유지, 부분적 자율희망
- 시설내 환경 만족도: 그저그렇다, 대체로 만족

현재 교도소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류심사제도나 운영방식, 시설환경 등에 대한 수형소년들의 만족도가 어느수준인지를 묻는 3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분류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문항인 '귀하가 받은 분류심사결과가 처우에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범죄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만족도의 평균수치가 성폭력범 집단(3.23)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살인범 집단(2.83)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표26 참조)1).

교도소내 생활의 자율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현상태를 유지'하거나 '부분적인 자율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나왔다.2)

교도소내에 있는 여러 시설과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온 집단은 살인·과실치사범 집단(3.50)이고, 시설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성폭력범 집단(2.84)이다.

그러나 상기한 집단간 차이는 세 변인 모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라는 F검증 결과가 나왔다(표27 참조).

<표26> 범죄유형에 따른 사법복지 만족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소년의 범죄유형			
		폭력/상해범(N=39)	살인/과실치사범(N=12)	성폭력범(N=31)	강도/절도범(N=110)
분류심사-처우 만족도	M	3.08	2.83	3.23	3.21
	SD	0.84	1.40	1.20	0.98
시설내 생활의 자율성	M	3.74	3.50	3.23	3.47
	SD	0.88	1.17	1.19	0.99
시설환경 만족도	M	3.08	3.50	2.84	3.06
	SD	0.81	0.52	1.19	0.89

1) 이 척도에서 2점은 '대체로 미반영' 3점은 '그저 그렇다' 4점은 '대체로 반영'을 의미함.

2) 이 척도에서 3점은 '현상태 유지' 4점은 '부분적 자율상태'를 의미함.

<표27> 범죄유형에 따른 사범복지 만족도의 변량분석

종속변인	Source	DF	자승합 (SS)	평균자승합 (MS)	F 값	유의도	사후 검증
분류심사 처우 만족도	집단간 변이성	3	1.98	0.66	0.63	ns	-
	집단내 변이성	186	193.95	1.04			
	전체 변이성	189	195.94				
시설내 생활 자율성	집단간 변이성	3	4.51	1.50	1.46	ns	-
	집단내 변이성	185	190.71	1.03			
	전체 변이성	188	195.23				
시설환경 만족도	집단간 변이성	3	3.85	1.28	1.55	ns	-
	집단내 변이성	186	154.50	0.83			
	전체 변이성	189	158.36				

(2) 현행 교정처우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 교정교화교화, 사회복귀효과가 높은 프로그램 : 귀휴, 직업훈련, 종교활동, 사회참관, 외부통근
- 교정효과가 낮은 프로그램 : 정신교육, 생활지도, 학과교육, 소년단활동

① 교정효과성이 높다고 평가된 프로그램

수형소년들이 현재 교도소에서 받고 있는 11가지 유형의 교정처우 프로그램들을 나열해 놓고 이 중에서 '교정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하라는 문항에 대해, 각각의 프로그램이 선정된 총 빈도수를 <표28>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수형소년들이 교정교화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 처우프로그램들은 귀휴프로그램(16.9%), 직업훈련(15.5%), 종교활동(14.8%), 정신교육(13.6%) 등이다. 집단별로 구분해 보아도 대체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단지 집단에 따라 특이하게 나온 것은 살인·과실치사범 집단에서 학과교육을 높게 평가한 점과 성폭력범 집단에서 교화위원활동에 대해 높은 평가가 나온 점이다.

<표28> 범죄유형별 교정프로그램의 교화 효과성 평가

	소년의 범죄유형				전체 응답수(%)
	폭력/ 상해범 응답수*	살인/ 과실치사범 응답수	성폭력범 응답수	강도/ 절도범 응답수	
학과교육 프로그램	13	9	2	17	41 (7.3)
직업훈련 프로그램	25	6	7	49	87 (15.5)
정신교육 프로그램	19	6	2	50	77 (13.6)
생활지도 프로그램	8	3	0	17	28 (5.0)
종교활동 프로그램	22	6	14	41	83 (14.8)
사회참관 프로그램	13	0	8	22	43 (7.7)
봉사활동 프로그램	2	0	6	24	32 (5.7)
귀 휴 프로그램	15	7	25	48	95 (16.9)
외부통근 작업	6	3	5	19	33 (5.9)
소년단 활동	5	3	5	7	20 (3.6)
교화위원 활동	7	1	10	3	21 (3.8)
계					560 (100)

* 복수응답 ** 음영부분은 각 집단별 최빈반응 3가지임.

②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된 프로그램

수형소년들이 현재 교도소에서 받고 있는 11가지 유형의 교정처우 프로그램들을 나열해 놓고 이 중에서 '출소후 사회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하라는 문항에 대해, 각각의 프로그램이 선정된 총 빈도수를 <표29>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수형소년들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처우프로그램들은 귀휴프로그램(21.3%), 직업훈련(18.3%), 사회참관(11.4%), 외부통근(9.8%) 등이다. 집단별로 구분해 보아도 대체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단지 집단에 따라 특이하게 나온 것은 폭력상해범이 다른 집단과는 달리 정신교육 프로그램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살인·과실치사범 집

단에서 봉사활동이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많이 나온 점이다.

<표29> 범죄유형별 교정프로그램의 사회복귀 효과성 평가

	소년의 범죄유형				전 체 응답수(%)
	폭력/상해 범 응답수*	살인/ 과실치사범 응답수	성폭력범 응답수	강도/절도 범 응답수	
학과교육 프로그램	10	2	0	21	33 (5.9)
직업훈련 프로그램	33	8	6	56	103 (18.3)
정신교육 프로그램	17	3	3	15	38 (6.8)
생활지도 프로그램	10	5	5	21	41 (7.3)
종교활동 프로그램	6	2	5	25	38 (6.8)
사회참관 프로그램	10	4	11	39	64 (11.4)
봉사활동 프로그램	7	6	9	15	37 (6.6)
귀 휴 프로그램	26	6	17	71	120 (21.3)
외부통근 작업	7	5	12	31	55 (9.8)
소년단 활동	3	1	4	2	10 (1.8)
교화위원 활동	6	0	9	9	24 (4.3)
계					563 (100%)

* 복수응답 ** 음영부분은 각 집단별 최빈반응 3가지임.

③ 교정효과가 낮아 폐지되어야 한다고 평가된 프로그램

수형소년들이 현재 교도소에서 받고 있는 11가지 유형의 교정처우 프로그램들을 나열해 놓고 이 중에서 '교정효과가 낮아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하라는 문항에 대해, 각각의 프로그램이 선정된 총 빈도수를 <표30>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형소년들이 교정효과가 낮다고 평가한 처우프로그램들은 정신교육(18.5%), 생활지도(17.7%), 학과교육(13.7%), Boy Scout 소년단활동(10.4%) 등이다. 집단별로 구분해 보아도 대체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왔다. 단지 집단에 따라 특이하게 나온 것은 성폭력범 집단이 다른 집단과는 달리 직

업훈련 프로그램이 교정효과가 낮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온 점이다.

<표30> 범죄유형별 효과성이 낮아 폐지를 제안된 프로그램

	소년의 범죄유형				전 체 응답수(%)
	폭력/ 상해범 응답수	살인/ 과실치사범 응답수	성폭력범 응답수	강도/ 절도범 응답수	
학과교육 프로그램	31	0	8	28	67 (13.7)
직업훈련 프로그램	9	3	12	18	42 (8.6)
정신교육 프로그램	22	5	9	55	91 (18.5)
생활지도 프로그램	18	9	12	48	87 (17.7)
종교활동 프로그램	9	0	2	13	24 (4.9)
사회참관 프로그램	5	3	3	23	34 (6.9)
봉사활동 프로그램	9	2	5	23	39 (7.9)
귀 휴 프로그램	2	2	3	12	19 (3.9)
외부통근 작업	4	1	0	6	11 (2.3)
소년단 활동	4	5	8	34	51 (10.4)
교화위원 활동	4	0	6	16	26 (5.3)
계					491 (100%)

* 복수응답 ** 음영부분은 각 집단별 최빈반응 3가지임.

(3) 사범복지 처우개선에 관한 욕구

- 분류수용제도의 개선 : 연령별 · 전과횟수별 · 처우별 수용
- 출소 프로그램의 개발 : 취업 적극알선, 학교복교지도
- 교도소내 시설의 개선 : 거실(숙소), 식당, 목욕탕
체육관, 직업훈련시설

① 분류수용제도의 개선

수형소년들에게 교도소내에서 범죄기술이 습득되는 것을 차단하고 교정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류수용이 어떤 형태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을 제시하고 5가지 분류수용형태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수형소년들은 교도소내에서 연령별(29.5%)로 구분하여 수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전과횟수별(23.0%)로 구분하거나 처우급별(19.7%)로 구분수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표31 참조).

범죄유형에 따라 독특하게 나온 반응은 성폭력범 집단에서는 보안계호별 수용(16.7%)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는 점이다.

<표31> 범죄유형에 따른 분류수용개선에 관한 욕구

	소년의 범죄유형				전 체 빈도(%)
	폭력/상해범 빈도(%)	살인/ 과실치사범 빈도(%)	성폭력범 빈도(%)	강도/ 절도범 빈도(%)	
연령별 수용	12 (30.8)	2 (20.0)	10 (33.3)	30 (28.9)	54 (29.5)
비행양태별 수용	4 (10.3)	1 (10.0)	3 (10.0)	14 (13.9)	22 (12.0)
전과횟수별 수용	10 (25.6)	2 (20.0)	4 (13.3)	26 (25.0)	42 (23.0)
처우별 수용	11 (28.2)	2 (20.0)	3 (10.0)	20 (19.2)	36 (19.7)
보안계호별 수용	1 (2.6)	1 (10.0)	5 (16.7)	10 (9.6)	17 (9.3)
기 타	1 (2.6)	2 (20.0)	5 (16.7)	4 (3.9)	12 (6.6)
계	39	10	30	104	171

* 음영부분은 각 집단별 최빈반응 3가지임

② 출소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수형소년들에게 앞으로 사회에 나가 재범하지 않고 잘 적응하기 위해서 교도소 출소할 때 우선적으로 실행하기를 바라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을 제시하고 5개 대안 중에서 응답케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취업을 적극알선(50.0%)해 줄 것을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희망하였고 학교재입학이나 복교를 지도(17.6%)하거나 보호자에 인계(15.3%)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줄 것을 희망하는 소년들도 많았다. 이에 반해, 출소후까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나 갱생보호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표32 참조).

이러한 특성은 집단의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욕구이다.

<표32> 범죄유형에 따른 출소후 필요한 프로그램에 관한 욕구

	소년의 범죄유형				전 체 빈도(%)
	폭력/ 상해범 빈도(%)	살인/ 과실치사범 빈도(%)	성폭력범 빈도(%)	강도/ 절도범 빈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5 (13.5)	0 (0.0)	3 (10.3)	8 (7.8)	16 (9.1)
갱생보호시설의 관리감독	3 (8.1)	1 (12.5)	2 (6.9)	6 (5.9)	12 (6.8)
취업 적극알선	3 (35.1)	3 (37.5)	16 (55.2)	56 (54.9)	88 (50.0)
학교재입학/ 복교지도	8 (21.6)	3 (37.5)	3 (10.3)	17 (16.7)	31 (17.6)
보호자에 인계	8 (21.6)	1 (12.5)	5 (17.2)	13 (12.8)	27 (15.3)
기 타	0 (0.0)	0 (0.0)	0 (0.0)	2 (2.0)	2 (1.13)
계	37	8	29	102	176

* 음영부분은 각 집단별 최빈반응 3가지임

③ 교정시설내 시설환경의 개선

수형소년들이 현재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10가지 유형의 시설종류를 나열해 놓고 이 중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선정하라는 문항에 대해 각각의 시설유형이 선정된 총 빈도수를 <표33>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수형소년들이 교도소내 시설 중에서 개선욕구가 가장 높은 시설은 단연 거실(숙소)이다. 전체소년의 절반 정도가 거실을 개선대상시설로 지적하였고, 그다음으로는 식당(35.4%), 목욕탕(35.4%), 체육관(31.2%) 등에 대한 개선욕구가 높았다.

집단별로 특이한 반응이 나온 것은, 살인·과실치사범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과는 달리 학습시설, 직업훈련시설, 상담실 등에 대한 시설개선욕구가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표33> 범죄유형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욕구

	소년의 범죄유형				전 체 (N=189)
	폭력/상해범 (N=39)	살인/ 과실치사범 (N=12)	성폭력범 (N=31)	강도/절도범 (N=107)	
거실	22 (56.4)	3 (25.0)	18 (58.1)	54 (50.5)	97 (51.3)
식당	20 (51.3)	2 (16.7)	5 (16.1)	40 (37.4)	67 (35.4)
목욕탕	14 (35.9)	2 (16.7)	11 (35.5)	40 (37.4)	67 (35.4)
도서관	6 (15.4)	3 (25.0)	6 (19.4)	23 (21.5)	38 (20.1)
체육관	10 (25.6)	7 (58.3)	8 (25.8)	34 (31.8)	59 (31.2)
접견실	11 (28.2)	3 (25.0)	11 (35.5)	18 (16.8)	43 (22.8)
학습시설	1 (2.6)	4 (33.3)	4 (12.9)	9 (8.4)	18 (9.5)
직업훈련 시설	4 (10.3)	4 (33.3)	13 (41.9)	29 (27.1)	50 (26.5)
분류심사실	2 (5.1)	3 (25.0)	3 (9.7)	15 (14.0)	23 (12.2)
상담실	3 (7.7)	4 (33.3)	3 (9.7)	17 (15.9)	27 (14.3)

* 음영부분은 각 집단별 최빈반응 3가지임

III. 소년교정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정책 제언

1. 서론

거의 모든 국가의 소년사법제도는 영국의 관습법(common law)으로부터 유래한다. 범죄책임과 관련하여 영국관습법은 범죄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정을 내놓고 있다. 첫째, 일곱 살 이하의 소년은 범죄의향을 소유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둘째 8살에서 14살까지의 소년은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셋째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가정하고 있다.(Harry E. Allen and Clifford E. Simonsen, 1986:295 ; 이윤호, 1999:892에서 재인용).

이러한 가정은 현재 우리 나라의 소년범죄자를 분류하는 기준과 많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소년법에서는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측범 소년'이라 하였다. 그리고 아직 법에 저촉되지 않았으나 불량성이 있어, 그대로 두면 장래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우범 소년'이라 규정하였다. 이들은 소년사법의 대상이 된다. 또한 형벌법규를 위반한 14세 이상의 소년은 따로 '범죄 소년'이라 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측범소년은 형사책임을 없는 형사미성년자이고 우범소년은 아직 반사회적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순히 불량성이 있을 따름임에도 범죄소년과 동일한 조사와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나채규, 1990:176 ; 이윤호, 1999:893에서 재인용).

과거에는 왕이 국가의 아버지였으며 따라서 그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었다. 특히 고아나 기타 미성년아동에 대한 양육과 보호의 책임은 보호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 즉 국가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궁극적인 보호자로서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국친사상(parens patriae)이고 국친사상이 소년사법의 철학적 기초가 되어 왔다.(Sue Titus Reid, 1981:349 ; 이윤호, 1999:893에서 재인용)

비행청소년문제는 그 심각성의 정도나 양태, 시대와 장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어온 게 사실이다.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소년사법제도나 관련정책들에 대해서도 오늘날 새로운 논의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2. 행형법에 근거한 소년교정제도

1) 개요

우리나라의 현행 행형법에서 구체적으로 소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조항은 동법 제2조(구분수용) 제2항에서 “소년교도소에는 만20세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한다”라는 규정과 동법 제32조(교육) 제1항에서의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연령, 지식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에 상응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뿐 기타 그 외의 다른 처우에 대하여는 일반성인범죄자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오늘날 소년범과 성인범에 대한 국가의 처우는 모두 범죄자의 교화개선이라는 교육형주의라는 방향에서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소년범의 경우 변화 가능성과 성숙한 인격체로의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존재라는 특별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각각의 국가들에서는 소년범에 대하여 더욱더 적극적인 보호적·교육적 접근을 견지하여 왔다. 그런데 형사처벌을 집행하고 있는 교정기관(소년교도소 등)에서는 소년수형자에 대하여 일반 성인수형자와 거의 동일한 행형법의 틀안에서의 처우를 실시하고 있어 보호적·교육적인 처우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2) 소년행형제도상의 문제점

교정시설내에서 비행청소년들에게 교정처우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들을 적절한 처우프로그램에 배치시키는 문제이다. 청소년과 프로그램을 연결시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 청소년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분류심사를 거쳐서 청소년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연령, 범죄 경중, 범수 등에 따라서 특정 시설에 수용되는 점이다. 둘째는 보호교정시설에서 분류를 정확히 한다해도 범죄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정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이훈규·김성언, 1996:32).

① 수용시설의 대규모화

현재의 소년교도소는 1개소당 대략 1,000명 가량을 수용하고 있는데, 수용여건에 비해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관리하고 있어 청소년의 개별적인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감안한 수용시설이라 할 수 없고 성인교도소와 유사한 형편이다.

② 성인위주 수용자분류기준의 적용

현재는 교도소에서 소년수형자 또는 성인수형자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형자분류수용지침’에 따라 범수(犯數)에 의하여 천안소년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에 구분수용하고 있다. 교도소내에서는 다시 외견상의 죄질유형과 관리정도에 의거 분류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교육의 극대화와 실질적인 개별처우의 시행을 위해서는, 심리적·환경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동일집단으로 분류되어 동질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분류기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③ 성인위주의 행형규칙 및 교정교화지침의 적용

청소년기는 성인과는 다른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갖는 시기이므로 교정교육의 내용도 피교육자의 특성에 맞게 구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행청소년들의 인지적, 성격적, 신체적 특성들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해서, 어떠한 교육내용/프로그램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비행성 교정 및 사회복귀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소년교도소의 교정교육에 접목시키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소년수형자에 대하여 행형법, 수형자분류처우규칙, 각종 교정(교육)교화운영지침 등 주로 성인수형자 중심으로 마련된 관리위주의 처우기준이 준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④ 전문교육인력의 절대부족

소년수형자들을 제대로 교정교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정교육담당 공무원들의 자질이 현재보다는 향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소년교도소 직원들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소년수형자들의 교육, 교화, 상담, 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전담인력을 별도로 채용·양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소년교도소의 학과교육은 교정직·교회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중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⑤ 청소년범죄경력에 따른 특성화된 교정처우 기법의 부족

현대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그 변화를 달리고 있고, 아울러 범죄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소년수형자들의 지능, 학력, 범죄동기 등에서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므로, 심리학, 상담학, 사회학, 교육학 등과 같은 인접 사회과학학문과 연계된 새로운 교정교육기법이 서둘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신입 수형자에 대한 생활지도에 있어서, 초범자에게는 현재와 같이 교정처우의 내용 등 수용생활에 대한 안내 위주의 지도를 실시하지만, 재범 이상자에게는 성격상담, 장래 진로상담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시설내 처우의 문제점

최근 국내외 범죄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시설내 처우의 폐해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오영근, 1988). 수용위주의 시설처우가 야기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을 들어보면, 시설내 처우는 범죄감소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범을 유발한다고 지적되며, 교도소는 사람을 비인간화시키고 개인을 숫자로 취급하는 등 시설내 처우는 비인도적이며, 시설내 처우는 비경제적이라는 것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탈제도화 전략은 첫째, 구금수준을 낮추고, 둘째, 청소년들을 제도화된 보호시설에 덜 수용하며, 셋째, 구금 대신 지역사회에 기반한 대안들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개선방향들이 제시되고 있다(McCarthy and McCarthy, 1984).

그렇지만, 대안적인 사회내 처우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탈제도화를 실시할 경우에는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재범률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이훈규, 김성언, 1996).

따라서, 시설내 처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러면서도 사회내 처우로 곧바로 전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비행청소년들의 사회복귀를 준비시키고 도와주는 중간처우제도의 확대일 것이다.

3. 소년법에 근거한 소년보호제도

1) 개요

우리나라 소년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년에 대한 교정과 보호를 통하여 개선을 도모한다는 보호주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소년법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이라는 이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소년법에 대해 처우하고 있다. 소년법에서의 보호처분이라 함은 동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가 규정하고 있는 7가지 처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처분은 그 실질적인 기능에 있어서 형사처분과의 한계가 모호한 점이 있다. ‘교육과 원호적인 처우를 통해 소년의 개선과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보호처분의 목표가 오늘날의 교정주의적 형사처분과 사실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보호처분을 순수한 보호적·교육적 처분으로만 보느냐, 아니면 형벌로 보느냐의 성격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데서 오는 혼선이라 할 것이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에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급적 포기하고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소년을 순전히 보호적·교육적 관점에서 필요한 처분을 강구함으로써 소년비행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에 있어서의 소년법에 대한 조치는 형벌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유진식, 1989: 231). 반면, 독일에서의 소년법에 대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신동운, 1989:145).

이와 같이 오늘날 소년사법은 첫째, 소년비행을 보호와 교육을 통해 해결하려는 입장(보호처분)과 둘째, 형사처벌을 유지하면서 교육적 성격을 가미하려는 입장(보호처분적 형사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소년법의 입장은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서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의 내용으로 보아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 보여진다.

2) 소년보호제도상의 문제점

① 소년보호사건 처리기간의 장기화

범죄소년이 보호소년교육기관에 들어오기까지는 그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일반적으로 촉법소년의 경우 약 70일이 소요되며 소년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죄소년은 검사송치의 경우 약 3개월, 형사법원 판사 송치의 경우 약 7개월이 소요되는 등 범죄소년의 대부분이 교육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

② 보호처분제도 중 1호 및 6호 처분의 실효성

소년사건은 40%가량이 기소되고, 이보다 더 높은 45%가량은 불기소되며 10% 내외가 소년부에 송치된다. 문제는 소년부에 송치되는 사건 뿐만 아니라 불기소되는 사건처리에 있어서 많은 경우 소년범들이 가족관계, 학교생활, 직업생활이나 지역사회에 있어서 적절한 통제기능의 밖에 놓여 있는 자들인데 이들을 그대로 이전의 열악한 사회적 환경(가족, 학교, 직업생활, 지역사회 등)으로 다시 돌려 보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소년부는 거의 대부분의 소년보호사건을 1호처분에 의하여 부모에게 돌려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초기에 적절한 소년보호조치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기 소년원송치(6호처분)는 수용기간의 단기로 인하여 체계적인 교정교육을 어렵게 한다. 또한 6호처분이 비록 단기의 보호처분의 한 종류라고 하지만 일반인이거나 수용된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형사처벌적 감정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결국은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또한 악풍감염의 우려도 예상된다.

③ 보호관찰 전문인력의 부족

보호관찰은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원호하에 재범을 방지하는 등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행형제도의 민주화를 구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1989년 제도도입 이후 업무량이 5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보호관찰 전문인력은 80%증가에 그치고 있어 충실한 보호관찰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4.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 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소년사법은 아직도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해서 인식하는 이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나라의 소년사법제도도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행형의 주요 이념이 교육형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다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이원적 구조는 실효성이 적어 보인다. 굳이 이원적 구조로 이해하려 한다면 보호처분에 좀더 무게를 실음으로써 복지적·교육적기능에 비중을 두고 범죄인을 교화개선 하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보호처분이 보호적·교육적 측면에 비중을 둔다 하더라도 사법기관의 징벌적·사회방위적 기능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년범죄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형사처분으로의 진행이든 보호처분으로의 진행이든 궁극적으로는 형벌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비행소년을 가장 합리적·효율적으로 교화 개선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법절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청소년은 아직 인격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대상이지만 그들에게 적절한 환경과 조건만 제공된다면 그들은 훌륭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이다.

2) 정책 제언

① 소년사법제도는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는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의 병행으로 범죄소년의 교화 개선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물론 소년사법제도의 이원적 구조는 성인범죄와는 달리 소년을 좀더 적극적으로 보호·원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호처분도 형사처벌임을 부인할 수 없는데도 이론적으로 보호처분을 소년에 대한 원호 및 복지로 상상하며 범죄소년을 보호한다는 안도감에 빠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소년사법제도의 절차적·규범적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즉, 보호처분이 범죄에 이르지 않은 우범소년을 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소년법 제3조 제3항 3호)있으며 부적합한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하게 하고 또한 단기로 소년원에 수용하는(소년법 제32조 제1항 7호)경우 체계적인 교육의 어려움과 악풍감염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등 소년법 제32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청된다 하겠다. 또한 범죄소년이 형사처벌(소년교도소)과 보호처분(소년원 수용)에 대하여 느끼는 고통의 강도도 형사처벌과 다름이 없다. 오히려 그들은 미성숙한 판단력으로 인해 장기의 소년원 수용보다 단기의 소년교도소의 형사처벌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며, 범죄피해자가 느끼는 형벌에 대한 집행격차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②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단일한 법률 적용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의 집행기관의 차이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은 소년교도소에 수용되어 행형법이 적용되고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은 소년원에 수용되어 소년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차이는 소년의 처우에 있어서 전혀 다른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범죄소년은 출소 후에는 전과사실이 기록되어 낙인의 강도가 오히려 소년원보다 훨씬 높고 행형법의 규율을 받으므로 교화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적인 활동이 소년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은 서로 통합운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소년교도소를 그대로 존치시킨다 하더라도 소년교도소에 적용되는 법률은 소년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소년법에 소년교도소에 수용되는 소년들을 위한 처우규정을 신설하고, 소년수형자만을 위한 별도의 '소년수형자분류처우규칙'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박길영, 2001).

③ 단기처우에 대한 교육방침의 정립

현행 교정교육은 생활지도, 교과교육, 직업훈련의 세가지를 기둥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소년을 육성시킬 것을 이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가가 부모의 입장에서 소년을 육성한다는 이른바 국친사상에 뿌리를 둔 것이다.

그러나 수용기간이 짧은 단기처우의 경우에는 육성 중시의 교육사상에서 생활교육에 중점을 두는 훈련 중시의 사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현행 교정교육은 소년의 지적능력, 노동능력의 향상 등 전인격의 발달로 비행성을 해소할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기간이 짧은 단기처우의 경우에는 실시되는 교과교육과 직업훈련이 기껏 보수교육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처우에 있어서는 보호소년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지도 및 도덕의식의 함양에 중점을 두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단기처우 과정은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퇴원한다는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소년에게 교육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시로 입·퇴원하기 때문에 적절한 집단형성이나 그에 따른 집단지도, 집단을 이용한 훈련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단기처우 과정은 정신적인 혼계나 비행에 대한 징계로 호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낮은 연령과 자질·능력의 부족 등 훈련적응능력이 부족한 소년에게 단기라고는 하지만 훈련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④ 실질적인 개별처우의 실시

오늘날의 법제도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나 범죄자를 자아의 확립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지원의 대상으로 보기까지 발달하여 왔다. 이는 국가와 그 구성원인 시민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과 범죄자를 기본권을 가진 「인간」이라고 본질적으로 인정함을 표명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소년원법 제39조의 경우,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자율성을 조장하고 각자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율성의 조장과 자기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자율성과 자기문제 해결노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교정교육은 성공하기 어렵다. 스스로 사회부적응의 원인을 깨닫고 그것을 제거하려는 개선의욕을 굳게하는 한편, 장점을 신장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데서 강하고 바른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자율성의 조장은 집단처우에 있어서는 한계를 떨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소년에게 보다 개별적인 처우를 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소년원법시행령 제15조 2항은 “개별교정처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보호소년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하며, 개별교정처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을 본인 및 보호자 등에게 알려 보호소

년이 스스로 자기 교정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등의 소년수용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정교육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은 자율성과 개별처우 원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소년의 비행적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교정교육과 생활지도 프로그램이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소년의 자발성에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형태를 띠고 있고, 집단적 처우중심의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소년원의 획일적 처우는 국제준칙의 규정에 위반된다.

소년은 각자가 자신만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아직 성장과정에 있다. 따라서 소년의 수요에 적합한 개별처우가 행해져야 하며, 자발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심리적·환경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동일집단으로 분류되어 동질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분류기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소년교도소에 설치되어 있는 분류심의실을 분류심사과로 확대개편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대분류제도를 시정하고 단계적 처우제도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⑤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 처우

소년형사사법제도는 일반사법제도와는 달리 적용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청소년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므로 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제도의 진행 절차에 있어 청소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들에 맞는 개별적 처우가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비행소년에 대한 형사처벌단계와 처우단계에 있어 전문가들에 의한 전문적 처우가 가해져 그들이 효율적으로 재사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전문인력의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는, 각 과목별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나 상담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교정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신직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훈련교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박길영, 2001).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많은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를 교정공무원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자원봉사자 등 전문인력을 조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소년들에게 시대적 변화에 따른 비행요인을 제거해 주는 한편, 지역사회에 비행환경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주고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원봉사자의 활용은 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카운슬링 분야와 직업훈련에 있어서의 첨단기술에 대한 교육 등에서 큰 공헌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⑥ 지역사회 차원의 추수(follow-up) 프로그램의 개발

소년시설내의 교과교육은 단지 졸업장의 취득에만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귀 이후 계속적으로 교육받을 권리와 기회를 소년에게 부여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소년들이 시설을 출소하여 사회에 복귀한 이후 이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소년원에서의 교과교육 도중에 중도 퇴소하는 청소년들에게 일반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소년원 수용기간의 공백을 극복하고 학교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소년은 많다. 따라서 수용시설을 나온 소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지역사회내 학교, 대안학교, 청소년단체 등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훈련을 수료한 소년원 퇴원 예정자나 기능자격을 취득한 소년교도소가 석방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 이와 연관된 사회내 직종에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하여 그 기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는 퇴원이나 가석방이 임박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기간 중에라도 외부통근 훈련을 확대하여 관련직종의 기능취득자에게는 우선적으로 기능향상을 하고 사회내 직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처우 시스템을 대폭 도입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높은 학습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박길영, 2001).

사회복귀를 위한 중간처우는 석방전 지도센터를 설치하거나 소규모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등을 다수 설치하는 등 시설투자 부문은 법무부가 담당하고 운영부문은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토록 유도하는 민-관 협력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주민의 협력에 의한 소년보호프로그램이 처우효과

가 크다는 사실도 검증되고 있다. 미국은 청소년범죄자에게 불필요한 부정적 낙인을 지우지 않고 필요한 통제가 가능한 질차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의할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청소년범죄자들을 전통적 사법제도 밖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사회청소년 봉사기관으로 청소년봉사국을 설치하고 있다. 청소년범죄자들을 집 가까이서 비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세토(瀬戸)소년원에서는 세토(瀬戸)가 도자기 명산지임을 이용하여 원생들에게 요업(窯業)교육을 시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이것도 지역사회 차원의 처우프로그램인 것이다.

⑦ 민영소년교도소의 설립

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천안과 김천 두 곳에만 소년교도소가 있으며, 그것도 남자소년만을 수용하는 곳으로서 여자소년을 수용하는 소년교도소는 전혀 없다. 이는 소년범죄의 증가와 심각화라는 범죄현상에 대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에서 볼 때, 이윤배반적인 정책부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년교도소를 시급히 확충하여야 하며, 소년범죄의 형태에 따른 다양한 처우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영소년교도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99년 12월 28일 행정법이 개정되어 교도소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그에 뒤이어 2000년 11월 9일에는 시행령이, 2001년 5월 22일에는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도 민간인 혹은 민간법인이 교도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민영교도소 설치를 위한 법률이 완비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국가가 수행하지 못하거나 교정효율성이 떨어지는 특화된 교도소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소년교도소야말로 민간에서 참여해야 할 중요한 교정교육 영역인 것이다.

앞으로 설립될 “민영” 소년교도소는 청소년에 대한 시설내 개별적 처우는 물론이고 출소후에도 지속적인 추수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100명 이내의 소규모 시설로 설치되어야 하며 전문적 처우를 실시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로 지도인력을 확보하며, 처우의 개별화조건에 맞는 제반 여건을 구비하도록 시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직업훈련 실습실, 체육관, 도서관, 정보검색실, 어학실 등의 교육시설이 주가 되는 “인간교육”교도소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길자(1986). 교정시설내 상담실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채규(1990).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활성화 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8집(법무부).
- 남상철(1996). 우리나라 분류처우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길영(2001). 소년수형자 교정교육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2000.11). 소년원생 교육과정 혁신(미발간 자료).
- 법무부(2000.8). 소년원 특성화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법무부 훈령 제427호)
- 법무부(2001). 수형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 법무부(2001).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지침.
- 법무연수원(2001) 범죄백서.
- 신동운(1989). “서독의 소년사법제도”, 각국의 소년사법제도연구, 법무자료 제113집.
- 오영근(1988). 범죄인의 사회내처우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회복지이론과 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성경·이소래(2001). “청소년 비행수준에 따른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3권 2호.
- 유진식(1989). “스웨덴의 소년사법제도”, 각국의 소년사법제도연구, 법무자료 제113집.
- 이병기·김성연(1995). 소년원생의 생활실태 및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윤호(1999). 형사정책, 서울:박문각.
- 이훈규·김성연(1996). 소년원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경숙·박병식·권소정(2001). 소외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연구(II), 한국청소년개발원.
- 守屋克彦(1998). 『現代の非行と少年審判』, 勁草書房.
- 澤登俊雄/比較少年法研究會(1991). 『少年司法と國際準則: 非行と子どもの人權』, 三省堂.
- 山口幸男(1991). 『司法福祉論』, ミネルヴァ書房.
- Bartol, Curt R.(1995). *Criminal Behavior: A Psychological Approach*.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Harry E. Allen and Clifford E. Simonsen(1986). *Correction in America*(4th ed), New York:Macmillan Publishing Co..
- McCarthy, B. Rogers and McCarthy, B.J.(1994). *Community-based Correction*. Monterey, CA:Brooks/Cole.
- Sue Titus Reid(1981). *The Correctional System*, New York:Holt, Reinhart and Winston.

연구보고

소년교정의 국제준칙과 외국의 현황

박병식 교수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민영교도소 연구팀장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 들어가며

2. 소년사범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과 시사점

1) 제정경과 및 개요

2) 시사점

(1) 시설내처우의 목적과 관련하여

(2) 조사연구, 계획, 정책입안 및 평가와 관련하여

3.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과 시사점

1) 제정경과 및 개요

2) 시사점

(1) 입소와 관련하여

(2) 시설과 관련하여

(3) 시설과 복장에 대하여

(4) 교육 직업훈련 및 작업과 관련하여

(5) 여가활동 관련시설의 확충에 대하여

(6) 의료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7) 직원의 무기휴대와 복장에 대하여

(8) 사찰과 불복신청에 대하여

(9) 사회복지에 대하여

(10) 직원확보와 연수에 대하여

4. 마치면서

자료

소년사범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고 조언자가 많으면 계획이 성공한다.(잠언 15, 22)

1. 들어가며

소년법과 관련하여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국제준칙을 확립하는 움직임이 유엔의 조직을 통해 급속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985년의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Beijing Rules)이 그 하나이고, 두 번째가 1989년의 「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그리고 세 번째가 1990년 「제8회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유엔가이드라인」(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Riyadh Guidelines) 및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이다.

유엔은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형사사법 및 소년사법 내지 범죄·비행의 방지와 관련되는 부분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인권과 처우는 이른바 자동차의 두 축으로서, 처우 속에서 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관계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¹⁾ 다시 말해서 「처우의 지침」에서 「권리의 장전」으로 중점이 변천되는 것이다.²⁾

이하 본 보고서의 관심사인 민영소년교도소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과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 중에서 시설내처우와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³⁾

2.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과 시사점

1) 제정경과 및 개요

1 Geohard O. W. Mueller, United Nations Norms and Guidelines i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1990), pp. 8.

2 芝原邦爾 『刑事司法と國際準則』(1985) pp.25 이하

3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과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 중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조항을 번역하게 본고의 끝부분에 첨부하였으므로 참조 바람.

「최저기준규칙」은 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동경)의 규칙안(1981년), 뮌헨대학 슈프링고른의 규칙안, 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 전문가회의의 규칙안(1983년), 제7회 유엔회의의 준비를 위한 지역회의·지역간전문가회의의 규칙안(북경을)을 거쳐 1985년 유엔회의에서 심의·가결되었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은 유엔에 의해 공포된 최초의 규칙이며, 세계적으로 충격을 부여하였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아직 이 규칙이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이 아직 존재하고는 있지만,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은 교정시설의 인도적이고 공정한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소년사범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1. 총칙

- (1) 소년사범의 기본이념 및 목적
- (2) 소년의 정의와 형사책임
- (3) 소년사범기관의 재량권
- (4) 적정절차의 보장(무죄의 추정, 범죄사실의 고지, 묵비권, 변호인 의뢰권, 부모·보호자 입회권, 증인신문권, 불복신청권)
- (5) 프라이버시의 보호

2. 수사 및 검찰

- (1) 최초의 접촉에 따른 배려
- (2) 다이버전
- (3) 경찰 내부의 전문화
- (4) 심판을 위한 신병구속

3. 심판 및 처분

- (1) 소년법원의 설치 및 소년심판의 방식
- (2) 변호인의 원조를 받을 권리 및 부모·보호자의 절차참가권
- (3) 사회조사
- (4) 비행과 요보호성에 대응한 처분결정
- (5) 처분의 다양화

(6) 최후수단으로서의 시설내처우

(7) 심리의 불필요한 지연 회피

(8) 소년범죄자 기록의 비밀유지

4. 시설외처우 및 시설내처우

(1) 시설외처우

- ① 처분의 효과적인 실시
- ② 소년에 대한 필요한 원조 및 자원봉사자의 활용

(2) 시설내처우

- ① 목적
- ② 조건부석방의 운용 확대 및 준시설내처우의 적용

5. 연구·계획·정책입안 등

2) 시사점

(1) 시설내처우의 목적과 관련하여

- ① 제26-1은 “시설에 수용된 소년의 훈련과 처우의 목적은 소년이 사회에 복귀하여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지원하기 위해 케어, 보호, 교육, 직업훈련을 소년에게 부여하는 데에 있다”고 하여 시설내 처우의 목적을 사회복귀에 두고 있다.

* 시사점

- 우리나라에 국가소년교도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영소년교도소를 설립·운영할 필요성은 무엇인가? 민영소년교도소의 설립목적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우리 행정법도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 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제1조)라고 규정하여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과연 우리의 소년행형이 진정으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오히려 수용·구금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 소년교도소는 수용·구급보다 소년의 사회복귀와 그를 위한 교육·훈련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며, 바로 이점에 민영소년교도소의 설립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② 제26-2는 “시설에 수용된 소년은 그 연령, 성별, 성격에 따라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케어, 보호 및 필요한 모든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심리학적, 의학적 및 신체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시사점:

- 이 규정은 각 소년의 상황에 맞춘 지원, 즉 집단처우가 아닌 개별처우를 강조하고 있다.
- 우리의 소년행형은 집단처우의 열악한 현실에 있으며, 개별처우는 단지 이념에 그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 특히 외국의 소년행형과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및 상담치료·심리학자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발표자가 시찰·방문한 이태리와 벨기에의 소년수용시설의 경우, 시설·가정간의 연계·협력과 소년의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해 사회복지사가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그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소년의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해 상담전문가·심리학자가 크게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제26-5는 “수용된 소년의 이익과 복지에 관하여 부모 또는 보호자는 액세스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시사점:

- 여기에서의 액세스권은 면회권뿐 아니라, 수용에 관한 정보에 액세스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 민영교도소에 관한 선입견·우려가 행형당국은 물론 전문가·시민 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선입견 및 우려를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소년의 이익과 복지를 위한 민영소년교도소의 처우와 운영실태에 대해 부모·보호자는 물론 일반국민에게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으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등 「열린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④ 제26-6은 “소년이 교육상의 불이익을 받아 시설에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과교육,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부여하도록 부처간 및 부서간의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시사점:

- 시설내수용의 마이너스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우과정에서 교육이 뒤쳐지지 않고 사회에 복귀하여 직업선택이 부자유스럽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처간, 부서간의 협력은 시설내 처우와 훈련의 질을 제고시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 과연 우리의 소년행형은 법무부와 타부처와의 연계·협력, 그리고 법무부 내의 연계·협력이 원활하다고 할 수 있는가?
- 부처간의 연계·협력에 있어서는 교과교육의 경우에는 교육부와, 직업훈련의 경우에 노동부와, 건강유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의 연계·협력 등 부처간의 협력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 부서간의 연계·협력도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동일한 소년을 다루면서도 소년교도소는 교정국이 관할하고, 소년원은 보호국이 관할하는 이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체제가 과연 타당한지 재검토하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예: 소년교정 부서를 신설하여 그 산하에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을 두는 방안).

(2) 조사연구, 계획, 정책입안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제30조는 “효과적인 계획 및 정책입안을 위한 기초로서 필요한 연구를 조직하고 추진하는 노력”(30-1), “구급중인 소년의 다양한 니즈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판정하는 노력”(30-2), “소년사법운영의 조직 내에 설치된 상설의 평가적 연구기관을 확립하고 운영의 적정한 평가 내지 장래의 개선·개혁을 위해 관련데이터,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노력”(30-3), “소년사법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실시되는 서비스의 공급”(30-4)을 규정하고 있다.

* 시사점:

- 이들 의무규정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행형당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민영소년교도소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교정사목위원회 민영교도소연구팀은 민영소년교도소가 설립·운영될 경우에

는 당연히 해체된다.

- 그러나, 상술한 의무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민영소년교도소의 종합적인 발전목표 수립과 실시 프로그램의 정기 검토·평가 및 소년의 니즈 확인·평가를 위해 민영소년교도소 내에 연구팀 내지 연구위원회가 조직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사회복지학·심리학·의학·신학·범죄학·교정학·형사법학·체육학·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재를 확보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다만 이 경우에, 그들 전문가를 상근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소년교정과 민영소년교도소 사업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인재풀로 하여 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안에 따라 태스크포스화 시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과 시사점

1) 제정경과 및 개요

제8회 유엔범죄방지회의(United Nations Congress on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가 1990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쿠바의 하바나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비행의 방지, 소년사범 및 청소년의 보호: 정책의 어프로치와 방향」을 다룬 제1 위원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유엔총회에 대해 「소년비행의 방지에 관한 유엔가이드라인」에 관한 결의와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는데, 이 결의는 1990년 가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의 제정경과는 다음과 같다.

1955년 제1회 범죄방지회의에서 「피구금자처우최저규칙」(Standards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1988년 12월 9일 유엔총회에서 「모든 형태의 구금 혹은 교도소수용에 붙여진 모든 자의 보호에 관한

원리의 골자」(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가 채택되었다. 그에 따라 소년 피구금자에 국한시켜 작성된 것이 바로 이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이다.

이 규칙의 입안은 직접적으로 제7회 유엔범죄방지회의가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의 작성을 요구하도록 결의한 것에서 발단하였다. 이를 받아 1986년 5월 21일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이 작업의 진행상황을 범죄방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제8회 유엔범죄방지회의에서 채택될 것을 예상하여 제안할 규칙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작업의 과정에는 각종 단체와 개인이 관여하였지만, 비정부조직 특히 Amnesty International과 Defense for Children International 등의 공헌이 컸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유엔의 연수소가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 되고 있다.

「소년비행의 방지에 관한 유엔가이드라인」과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과, 각국은 자국에 있어서의 이들 규칙의 적용상황에 대해 유엔사무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제8회 유엔범죄방지회의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소년사범에 관한 각종 기준을 포함한 매뉴얼의 발행을 요청하고 있다. 이 결의가 실현되면, 매뉴얼에는 「소년사범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유엔가이드라인」,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과 이들 규정에 관한 주석이 포함되게 될 것이다.

2) 시사점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은 소년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IV. 소년시설의 관리운영

- (A) 기록
- (B) 입소, 등록, 이동 및 이송
- (C) 분류와 수용

- (D) 물적 환경과 설비
- (E) 교육, 직업훈련 및 작업
- (F) 레크리에이션
- (G) 종교
- (H) 의료상의 조치
- (I) 질병, 부상, 사망의 통지
- (J) 지역사회와의 광범한 접촉
- (K) 신체의 억제 및 실행행사의 제한
- (L) 징계절차
- (M) 사찰과 불복신청
- (N) 사회로의 복귀
- (O) 직원

이에 이들 규정 중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중요한 시사점이 될만한 규정을 추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입소와 관련하여

① 제23조는 “수용 후 가급적 조기에 소년의 인격상태 및 환경에 대한 충분한 보고서가 작성되고, 관련된 정보가 수집되어 시설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7조는 “소년은 입소후 가급적 조속히 면접을 받고 또 소년에게 필요한 케어 및 처우프로그램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심리학적·사회적인 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시사점:

-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에는 입소시 사회복지사에 의해 가정환경 등에 대한 조사가 행해지고 심리학자·상담전문가에 의해 소년의 심리상태에 대한 조사가 행해지며, 그것을 소년의 교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형법에 신입자의 건강진단, 목욕, 신원조사, 소년에 대한 30일까지의 신입자 거실수용 및 작업면제, 수용자의 신분장 작

성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반면에 소년의 인격상태 및 환경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소년의 가정환경 및 성장환경 조사 및 입소시의 인격상태 조사는 시설내의 수용장소 판단, 케어 및 처우프로그램의 종류·수준 결정 등 개별처우 계획의 수립과 실시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 핵심이다. 따라서 소년의 환경조사와 심리조사를 보다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② 제24조는 “입소시에 불복신청·수리기관의 주소 및 공적 혹은 사적인 법적 원조기관의 주소와 아울러 구금시설관리규칙의 복사본 및 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씌어진 권리의무의 설명서가 소년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읽기 쓰기를 할 수 없거나 서면의 문구를 이해할 수 없는 소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5조는 “모든 소년은 시설내의 관리기구에 관한 규칙, 제공되는 케어의 목적과 방법, 징벌의 요건과 절차, 정보의 청구 또는 불복신청의 정식 방법, 그리고 구금중의 권리의무를 충분히 이해시키는 데 필요한 기타 모든 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지원이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시사점:

-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에는 입소시 사회복지사에 의해 가정환경 등에 대한 조사가 행해지고 심리학자·상담전문가에 의해 소년의 심리상태에 대한 조사가 행해지며, 그것을 소년의 교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 우리 행형법도 신입자에 대하여 형기, 접견 및 서신, 규율·징벌 및 청원, 기타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거실에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권리에 대한 규정은 신입시에 ‘고지’하고 거실에는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붙이도록 함으로써, 권리보다는 의무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또한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의 리스트와 그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 및 확보방법이 미비하며, 범죄소년의 교육수준과 식자수준에 걸맞도록 성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권리와 의무를 설명한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거실 내에 상비하여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소년의 권리 강화는 향후 민영교도소에서의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본이기도 하다.

(2) 시설과 관련하여

제30조는 “소년을 위한 개방적인 구금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방적인 구금시설이란 보안시설이 없거나 최소한인 시설을 말한다. 구금시설의 수용인원은 가급적 소수이어야 한다. 폐쇄적인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소년의 인원도 개개인의 사정에 따른 개별처우가 가능할 만큼 소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시사점:

- 먼저, 개방적인 구금시설의 요구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이 가능하며 꼭 해야 할 것인지 쉽게 판단·결정할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외곽 담장의 보안이 확보되었다는 전제 하에 향후 소년교도소의 공간은 성인의 그것과는 달리 보다 개방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설계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이태리의 경우에도 6미터 높이의 외곽담장 안의 주거공간과 교육·훈련공간은 상당히 개방적인 분위기였음을 확인하였다.
- 다음으로 소규모 소년교도소의 요구이다. 시찰한 이태리의 경우에는 법률로 시설 당 60명을 초과하여 수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장 많은 밀라도 소년교도소가 70명 수용하고 있음. 물론 성인교도소는 과밀상태에 있음). 이에 반하여 현재 우리나라 천안과 김천 소년교도소는 각각 700-800명 정도로 과밀상태에 있다.
- 법무부는 작년의 입찰공고의 지침에서 최소 300명 이상의 규모를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법무부가 교도소 수용의 과밀해소에 중점을 둔 것이며, 현재의 과밀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조치라고도 판단이 된다. 그러나 소년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국제준칙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별처우라는 처우이념과도 상치된다.
- 따라서 성인교도소와는 달리 소년교도소만큼은 소규모로 설립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시설과 복장에 대하여

- ① 제33조는 “취침설비는 그 지역의 수준에 유의하면서 소집단의 공동침실 또는 개실로 구성될 것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시사점:

- 우리나라는 행형법상으로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정신·신체상의 유해한 경우, 수용자의 교화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살·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과밀수용·독거실의 부족 시에는 혼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원칙과 예외가 역전되어 있는 실정이다(엄정독거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에서 독거수용은 규칙위반에 징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 현재의 혼거구금(1인당 0.5평)이 적정수용의 한계를 초월한 과밀수용임은 분명하며, 그 폐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바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거구금만이 옳고 혼거구금은 잘못된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하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프로그램의 종류와 공동생활방식의 채택 등을 위해서는 혼거수용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이 문제는 1인당 확보해야 할 넓이와 각 거실 당 적정한 수용인원 등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교정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연구와 연계시켜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로 잡고 있다.
- ② 제36조는 “소년은 가능한 한 사복을 착용할 권리가 있다. 소년구금시설은 소년이 기후에 적합하고 양호한 건강을 확보하기에 적절하며 품위를 유지하거나 굴욕적이지 않은 의류를 소지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시사점:
- 현재처럼 푸른 수의와 그 상의 왼쪽에 붙이게 되어있는 번호표 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 하물며 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 (재)아가페 민영교도소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형번호 대신 이름을 부르고, 운동복 형태의 옷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 향후 소년 수용자에게 어떤 형태의 복장이 바람직한지, 작업복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4) 교육·직업훈련 및 작업과 관련하여

- ① 제38조는 “교육은 소년이 석방 후 계속해서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소년구금시설 밖의 지역사회 학교에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가진 교사에 의해 그 국가의 교육제도에 통합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9조는 “계속해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의무교육 취학연령을 초과한 소년에게는 그것을 허용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에의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시사점:

- 소년원을 비롯하여 소년교도소의 교육체제가 과거보다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설 내에서의 교육과 석방 이후의 계속교육이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입소 전의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고 학교를 자퇴하고 포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 이는 단지 법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와의 연계·협력이 요구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일단 석방하였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애프터케어와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해 수용기간 중에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강의나 ‘대안학교’와 연계시키고 학비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② 제42조는 “모든 소년은 장래의 취업을 준비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직종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43조는 “적절한 직업선택과 시설운영상의 요구를 정당하게 고려하여, 소년은 종사하길 희망하는 작업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시사점:

- 소년들은 석방 후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직업에 가장 관심이 많으며, 따라서 직업훈련은 그들의 재범과 일탈을 막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행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현실사회와 괴리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년들의 니즈에 걸맞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다양화가 절실하다.

- 하지만, 특정한 소년교도소에서 많은 소년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킨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 따라서 외부의 전문학원과 연계하여 직접 그 학원에 통근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시스템의 구축을 심도 있게 고려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구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술하지 않기로 한다.

(5) 여가활동 관련시설의 확충에 대하여

제47조는 “모든 소년은 적절한 레크리에이션 훈련이나 신체적인 훈련을 위해 충분한 장소, 설비 및 용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시사점:

- 이 규정은 향후 설계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참고로 작년에 시찰한 벨기에 프레퐁(Fraipont)의 중구금시설의 경우, 10명의 수용소년을 위해 휘트니스센터와 실내체육관을 완비하고 있으며, 외부 운동장에는 운동시 소년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닥에 카펫을 깔 정도로 완비되어 있었다.

(6) 의료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제49조는 “모든 소년은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해 적절한 의료적인 조치를 받는다. 여기에는 치과, 안과 및 정신신경과의 조치가 포함되며, 의사의 처방에 의한 의약품 및 치료식(diet)을 포함한다. 이 모든 의료적인 조치는 가능한 경우 소년에 대한 낙인을 방지하고 소년의 자존심과 공동체로의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구금시설이 속한 지역사회의 적당한 보건·건강시설 및 서비스를 통해 소년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시사점:

- 의료조치는 수용자의 신체적 건강유지와 질병치료를 위한 중요사항이다. 그런데 수용자의 대부분은 교도소 입소와 동시에 국민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에 있다. 따라서 국민의료보험의 혜택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민영교도소등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은 의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의료시설을 요구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상술한 규정처럼 치과·안과·정신신경과의 의료시설까지 요구하는 것은 소년교도소, 특히 소규모를 요구하고 있는 국제준칙의 규정에서 보아 무리이며, 나아가 의사부족의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 따라서, 민영소년교도소에 설치할 의료시설은 응급조치가 가능하고 비상약을 구비한 정도로 그치고, 그밖에 본격적·지속적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7) 직원의 무기휴대와 복장에 대하여

① 제65조는 “직원의 무기휴대 및 사용은 소년을 구금하는 어떠한 시설에서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시사점:

- 이에 반하여 민영교도소법은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당해 교정법인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이를 배정한다”고 하여, 무기 및 실탄의 휴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 ② 민영교도소법률은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 시행규칙은 “제복은 교도관복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정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교화·분류심사·교육훈련 등 직무상 필요한 경우와 근무지역의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시사점:

- 제복은 규율을 강조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나, 교육과 치료 등 교정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민영소년교도소의 직원은 경비교도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복을 입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이태리와 벨기에의 시설에서는 심지어 교도소장에서 경비교도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예외 없이 전원 사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는 소년들에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시설에 수용되었다는 느낌을 가급적 배제시키려는 배려이며, 제복을 입으면 아무래도 엄격해지기 쉽다는 실질적인 이유를 감안한 조치이다.

(8) 사찰과 불복신청에 대하여

제72조는 “시설의 관리기구에 속하지 않는 자격 있는 사찰관 또는 정당하게 조직된 동등한 기관은 정기적으로 사찰할 권한 및 자신의 의사로 시설에 통고하지 않고서 사찰할 권한이 있으며, 직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73조에서는 사찰기관에 “의무관”을 포함시켜 신체적 환경, 위생, 설비, 식사, 운동 및 의료서비스,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시설생활에 관한 기타 모든 측면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74조 “사찰 종료 후, 사찰관의 보고서 제출의무 및 법규정 위반 발생을 발견할 경우의 수사·소추 권한을 가진 기관에의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77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이 행한 불복신청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공평한 문제해결의 달성을 지원하는 독립된 직무를 행하는 옴부즈맨의 설치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 시사점:

- 행형법은 판사 및 검사의 시찰, 법무부장관 및 공무원의 순회점검을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 수용자로 하여금 순회점검 공무원에 청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제6조).
- 먼저 시찰의 경우, 의사는 시찰의 주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도 시찰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특별히 임명된 의사를 시찰의 주체로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청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수용자가 교도소장 및 교도관을 의식하지 않고 청원하기란 쉽지 않으며, 청원을 해도 그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결과를 반드시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청원제도의 형해화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자유롭게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에 대한

답변의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나아가, 인권관련 시민단체를 활용하여 음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9) 사회복지에 대하여

제80조는 “사회복귀의 성공을 조성하기 위해 석방시 적당한 주거, 직업, 의복 또는 자기 유지에 충분한 수단을 소년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대표는 소년의 사회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구금중인 소년을 면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시사점:

- 소년교도소의 존재이유는 형벌의 부과보다 소년의 사회복지에 두어져야 한다. 아무리 교도소에서의 교정프로그램이 완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회복지가 원활하지 않으면 교정효과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 그런데 우리 현실은 전과자에 대한 선입견과 냉엄한 시선으로 출소자들의 사회복지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하물며 소년들의 경우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 따라서, 교정프로그램과 함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체계화와 아울러 각종 공적·사적 지원이 요구된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연구는 금년도의 연구과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술하지 않기로 한다.

(10) 직원 확보와 연수에 대하여

제81조는 “직원은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교과지도원, 직업훈련사, 카운슬러,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및 심리요법사 등 충분한 수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들 전문가 및 기타 전문가 스태프는 통상 상근직으로 고용되어야 한다. 다만 이 전문가들이 비상근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이더라도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및 훈련 수준에서 보아 적절하고 유익한 경우에는 비상근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라도 상관없다. 구금시설은 구금된 소년의 개별적인 요구 및 문제에 따라 당해 지역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치료적·교육적·도덕적·정신적 기타 자

원 및 지원의 형태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제85조는 “직원은 직원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아동심리, 아동복지 및 본 규칙을 포함한 인권 및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기준 및 규칙에 대한 연수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시사점:

- 전술한 바와 같이 각종 전문가를 상근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소년교정과 민영소년교도소 사업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인재풀로 하여 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안에 따라 태스크포스화 시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된다.
- 추가적으로, 직원의 연수에 있어서 아동심리, 아동복지 및 소년행형 관련 국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마치면서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들을 위해 ‘소년원법’이 특별히 제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소년들에게는 ‘소년교도소법’이 없이 성인수용자들에게 적용되는 행형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소년원은 보호처분을 행하는 시설이고 소년교도소는 형사처분을 행하는 시설이라는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범죄자인 성인과 소년을 행형법이라는 하나의 법을 적용하는 방법론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교도소의 존재이유가 사회복지에 있고 소년교도소의 경우에는 그 의의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똑같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성인에게 적용되는 행형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소년법이 범죄소년과 우범소년, 촉법소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서 보더라도 현재의 법체계와 운용은 잘못된 태도라고 판단된다.

본고는 소년교정 및 시설수용과 관련된 국제기준의 규정을 소개하고, 그 규정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민영교도소가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소년민영교도소는 선례가 없다. 때문에 민영소년교도소에 관한 연구도 그만큼 어려

을 수박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 민영소년교도소의 모델을 정립하고, 그에 걸맞게 노력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민영소년교도소가 출범된다면 그 나름대로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 행형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이다.

국가소년교도소의 민간위탁 내지 민영화나, 기존의 틀에 약간 변형·가미한 형태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회에 복귀하여 남은 긴 여생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관점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같은 뜻을 가진 많은 이들의 도움과 협력이 있다면, 창조와 도전의 연구작업은 반드시 민영소년교도소의 설립에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많은 조언과 기도를 기원한다.

[자료]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Beijing Rules)

제5부 시설내처우

제26조 시설내처우의 목적

- 26-1 시설에 수용된 소년의 훈련과 처우의 목적은 소년이 사회에 복귀하여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지원하기 위해 케어, 보호, 교육, 직업훈련을 소년에게 부여하는 데에 있다.
- 26-2 시설에 수용된 소년은 그 연령, 성별, 성격에 따라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케어, 보호 및 필요한 모든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심리학적, 의학적 및 신체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 26-3 시설에 수용된 소년은 성인과 분리하여 취급되며, 시설을 별도로 하든가 성인도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획을 달리하는 장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 26-4 시설에 수용된 여자소년범죄자에 대해서는 그 니즈와 문제에 관하여 특별한 배려를 요한다. 여자소년범죄자가 남자소년범죄자보다 열악한 케어, 보호, 지원, 처우, 훈련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공정한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 26-5 수용된 소년의 이익과 복지에 관하여 부모 또는 보호자는 액세스권을 가지고 있다.
- 26-6 소년이 교육상의 불이익을 받아 시설에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과교육,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부여하도록 부처간 및 부서간의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제27조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의 적용

- 27-1 피구금자처우에관한유엔최저기준규칙 및 이와 관련된 권고는 시설에 수용된 소년범죄자(미결구금중인 자를 포함)의 처우와 관련되는 한 적용되어야 한다.
- 27-2 소년의 연령, 성별, 성격에 특유한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에 정해진 관련원칙을 가급적 최대한 실시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조건부석방의 빈번하고 조기의 활용

- 28-1 시설로부터의 조건부석방은 적절한 부서에 의해 가급적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조속히 허가되어야 한다.
- 28-2 시설로부터 조건부로 석방된 소년은 적절한 부서에 지원, 감독되며, 또한 지역사회로부터 충분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반시설적 조치

- 29-1 소년의 적절한 사회재통합을 지원하는 하프웨이 하우스, 교육홈(educational home), 주간훈련센터 기타 적절한 반시설적 조치를 강구하는 노력을 행하여야 한다.

제6부 조사연구, 계획, 정책입안 및 평가

제30조 계획, 정책입안 및 평가의 기초로서의 조사연구

- 30-1 효과적인 계획 및 정책입안을 위한 기초로서 필요한 연구를 조직하고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30-2 소년에 의한 범죄·비행의 경향, 문제점 및 원인과 구금중인 소년의 다양한 니즈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판정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30-3 소년사법운영의 조직 내에 설치된 상설의 평가적 연구기관을 확립하고 운영의 적절한 평가 내지 장래의 개선·개혁을 위해 관련데이터, 정보를 수집, 분석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0-4 소년사법운영에 있어서의 서비스의 공급은 국가발전 노력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IV. 소년시설의 관리운영

A. 기록

제19조 법적기록, 의료기록 및 징계절차상의 기록 등을 포함한 모든 보고서 및 처우의 형태, 내용 및 상세한 기타 모든 기록은 비밀이 유지된 개인파일에 보관되어야 하며, 이 개인 파일은 늘 최신정보를 싣고 권한 있는 자만이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알기 쉽게 분류되어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소년은 그 파일에 기재된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그렇게 함으로써 부적절하고 근거 없으며 불공정한 표현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적절한 제3자의 청구에 기초하여 파일에 액세스하고 또 조사할 수 있는 절차가 만들어져야 한다. 신병이 석방된 경우에는 소년의 기록을 밀봉하고 또 적당한 시기에 말소되어야 한다.

제20조 소년은 누구나 사법, 행정 혹은 기타 공공기관에 의한 정식 구금명령 없이는 구금시설에 수용되지 않는다. 구금명령의 상세는 즉시 기록부에 기입되어야 한다. 소년은 누구나 그러한 기록부가 없는 시설에 구금되어서는 아니된다.

B. 입소, 등록, 이동 및 이송

제21조 소년이 구금된 모든 장소에서 수용된 소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도 정확한 기록이 보존되어야 한다.

- (a) 소년의 신원에 관한 정보
- (b) 소년에 대한 구금의 사실과 이유 및 담당기관
- (c) 입소, 이송 및 석방일시
- (d) 구금시설에 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해 소년의 입소, 이송 혹은 석방을 통지한 사항
- (e) 약물 및 알코올의 남용을 포함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제22조 상기한 입소, 수용, 이송 혹은 석방에 관한 정보는 지체 없이 부모 및 보호자 혹은 당해 소년에 가장 친근한 친족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23조 수용후 가급적 조속히 소년의 인격상태 및 환경에 대한 충분한 보고서가 작성되고, 관련된 정보가 수집되어 시설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24조 입소 시에 불복신청수리기관의 주소 및 공적 혹은 사적인 법원조기기관의 주소와 아울러 구금시설관리규칙의 복사본 및 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씌어진 권리의무의 설명서가 소년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읽기 쓰기를 할 수 없거나 서면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소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제25조 모든 소년은 시설내의 관리기구에 관한 규칙, 제공되는 케어의 목적과 방법, 징벌의 요건과 절차, 정보의 청구 또는 불복신청의 정식 방법, 그리고 구금중의 권리의무를 충분히 이해시키는 데 필요한 기타 모든 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지원이 주어져야 한다.

제26조 소년의 이송은 시설당국의 비용으로 실시되며 교통수단은 적당한 환기와 조명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고통이나 부당한 취급을 수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소년은 시설에서

시설로 자의적으로 이송되어서는 아니된다.

C. 분류와 수용

제27조 소년은 입소후 가급적 조속히 면접을 받고 또 소년에게 필요한 케어 및 처우프로그램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심리학적·사회적인 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입소 시에 소년을 진찰한 의료직원의 보고서와 함께 시설내의 어디에 수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혹은 어떤 종류·수준의 케어 및 처우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결정하기 위해 시설의 장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특별한 사회복귀처우가 필요하고 또 시설 수용기간 중에 그것이 가능하면, 연수를 받은 시설직원은 처우의 목표와 시간의 틀, 그리고 그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 순서 및 유예기간을 명기한 개별적인 처우계획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28조 소년의 신병구속은 연령, 인격, 성격 및 범죄유형에 따른 소년의 특수한 요구, 상태 및 특별한 필요와 소년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소년을 유해한 영향 및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보장하는 조건하에서만 허용된다.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할 때의 주요 판단기준은 당해 소년의 개인적 니즈에 따른 최적의 니즈를 제공하고 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및 도덕적인 완성과 행복을 보호한다는 관점이어야 한다.

제29조 모든 구금시설에서 가족을 제외하고, 소년은 성인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명백하게 소년의 이익이 되는 것이 분명해진 특별한 처우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신중하게 선별된 성인과 소년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다.

제30조 소년을 위한 개방적인 구금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방적인 구금시설이란 보안시설이 없거나 최소한인 시설을 말한다. 구금시설의 수용인원은 가급적 소수이어야 한다. 폐쇄적인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소년의 인원도 개개인의 사정에 따른 개별처우가 가능할 만큼 소수이어야 한다. 소년의 구금시설은 소년과 가족이 용이하게 면회·접촉할 수 있도록 지방에 분산되고 또 그에 적합한 규모이어야 한다. 소규모의 구금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그것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환경에 뿌리를 내린 것이어야 한다.

D. 물적 환경과 설비

제31조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은 건강과 존엄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소년구금시설의 설계와 물적 환경은 프라이버시, 감각적 자극, 수용자 동료와 접촉할 기회 및 스포츠, 체조 및 여가활동에의 참가에 대한 소년의 니즈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수용처우의 사회복귀 목적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년구금시설의 설계와 구조는 방화대책을 완비하고 건물로부터의 안전한 대피를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규의 훈련된 순서와 함께 화재시의 효과적인 경보시스템이 존재하여야 한다. 소년구금시설은 건강상 기타 장애와 위험이 존재하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제33조 취침설비는 그 지역의 수준에 유의하면서 소집단의 공동침실 또는 개실로 구성될 것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취침시간 중 개개소년의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개실과 공동침실을 포함한 모든 취침구역에서 정기적이고도 평온한 감시가 행해져야 한다. 모든 소년은 지역 또는 국가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충분한 침구가 제공되어야 하며, 제공할 때에는 잘 정비되고 청결함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도록 자주 교환되어야 한다.

제34조 화장실은 프라이버시, 청결, 품위가 확보된 상태에서 필요한 때에는 모든 소년이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걸맞은 충분한 규격이어야 한다.

제35조 개인재산의 소지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의 기본요소의 하나이자 소년의 심리적 안정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다. 개인재산을 소지하고 안전한 보관장소를 가질 모든 소년의 권리는 충분히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소년이 보관하지 않거나 혹은 몰수된 개인재산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그 명세서에는 소년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들 개인재

산을 양호한 상태로 보관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 모든 금품은 소년이 금전을 소비하거나 이들 재산을 시설 밖으로 송부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방시 소년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소년이 의약품을 수취하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직원이 그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 소년은 가능한 한 사복을 착용할 권리가 있다. 소년구금시설은 소년이 기후에 적합하고 양호한 건강을 확보하기에 적절하며 품위를 유지하거나 굴욕적이지 않은 의류를 소지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시설에서 이동하거나 퇴소하는 소년은 사복의 착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37조 모든 소년구금시설은 모든 소년에게 적절히 조리되고 통상의 식사시간에 제공되며 영양상, 위생상 및 건강상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또 가능한 한 종교적·문화적 요구를 충족하는 질과 양의 식사를 부여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모든 소년이 언제나 깨끗한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 교육, 직업훈련 및 작업

제38조 의무교육의 취학연령에 있는 모든 소년은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적합하고 사회복귀의 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교육은 소년이 석방후 계속해서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소년구금시설 밖의 지역사회 학교에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가진 교사에 의해 그 국가의 교육제도에 통합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 소년구금시설의 관리자는 외국인 또는 특수한 문화적·민족적 요구를 가진 소년의 교육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읽기 쓰기가 불가능한 소년이나 인식상 혹은 학습상의 곤란을 가진 소년은 특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9조 계속해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의무교육 취학연령을 초과한 소년에게는 그것을 허용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에의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0조 구금중인 소년에게 수여되는 졸업증서나 교육상의 증명서는 어떤 방법이든 소년이 시설에 수용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41조 모든 소년구금시설은 교육 및 오락도서와 소년용 정기간행물을 충분히 갖춘 도서실에 의 액세스를 소년에게 제공하고,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 모든 소년은 장래의 취업을 준비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직종에 대하여 직업 훈련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3조 적절한 직업선택과 시설운영상의 요구를 정당하게 고려하여, 소년은 종사하길 희망하는 작업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제44조 아동노동 및 청소년노동에 적용되는 모든 국내적 및 국제적 보호기준은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45조 가능한 한 소년이 사회복귀를 한 때에 적절한 직업을 얻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을 보완하는 뜻에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역사회에서 보수를 받는 노동에 종사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작업의 종류는 석방후 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년구금시설에서 제공하는 작업의 조직과 방법은 정상적인 직업생활의 모든 조건을 소년에게 준비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의 동종 작업에 가능한 한 근접한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소년은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소년의 이익 및 직업훈련에 의한 이익을 소년구금시설 내지 제3자의 이윤추구 목적에 종속시켜서는 아니된다. 석방시 소년에게 교부되는 저축자금으로 하기 위해, 소년수입의 일부를 적립하여야 한다. 소년은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자신의 범죄에 의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 또는 가족 기타 시설 밖의 사람에게 송금하기 위해 남은 수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F. 레크리에이션

제47조 모든 소년은 기후가 허용하는 한 밖에서 매일 적절한 시간 자유로운 운동을 할 권리가 있으며, 그 시간 중에는 적절한 레크리에이션 훈련이나 신체적인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활동을 위해 충분한 장소, 설비 및 용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소년은 이밖에 매일 여가활동을 위한 특별시간을 가지며, 소년이 희망하는 경우 그 일부는 각 소년이 이용 가능한 체육프로그램에 물리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치료적인 체육이나 의료를 필요로 하는 소년에게는 의사의 지도에 기초하여 그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G. 종교

제48조 모든 소년은 특히 구금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종교집회에 참석하거나 자신의 종파의 의식에 참석하고, 그 종교의식이나 교리에 관하여 필요한 서적이거나 물품을 소지함으로써 자신의 종교 및 정신생활상의 니즈를 만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구금시설이 동일한 종교에 속하는 상당수의 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명 내지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그 종교의 대표자가 임명 혹은 승인 받아 정기적으로 종교의식을 행하고, 소년의 의리를 받아 개인적으로 종교적인 방문이 행해지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모든 소년은 종교의식에 참가하지 않을 권리 및 종교적인 교육·상담 내지 전도를 거부할 권리, 자신이 선택한 종교에 관하여 자격을 가진 대표자의 방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H. 의료상의 조치

제49조 모든 소년은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해 적절한 의료적인 조치를 받는다. 여기에는 치과, 안과 및 정신신경과의 조치가 포함되며, 의사의 처방에 의한 의약품 및 치료식(diet)을 포함한다. 이 모든 의료적인 조치는 가능한 경우 소년에 대한 낙인을 방지하고 소년의 자존심과 공동체로의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구금시설이 속한 지역사회의 적당한 보건 건강시설 및 서비스를 통해 소년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50조 모든 소년은 과거에 취해진 질병치료의 경력을 기록하고 의학적인 주의를 요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인 상태를 발견하기 위해 입소 직후 의사에 의한 진찰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51조 소년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질병, 약물남용 기타 사회통합에 방해가 되는 상태를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소년 구금시설은 적절한 의료시설에 즉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수용자의 수 및 그 수요에 적합한 의료설비를 갖추고 예방적 헬스케어(health care) 및 응급조치 훈련을 받은 스태프진을 비치하여야 한다. 질병을 가진 모든 소년, 병상을 호소하는 소년 및 신체적·정신적인 곤란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소년은 지체 없이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52조 의사는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계속적인 구금, 단식투쟁 기타 모든 구금조건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거나 향후 받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시설의 장 또는 소년복지를 보장할 책무가 있는 독립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 정신병에 걸린 소년은 특별한 시설에서 독립된 의료관리 하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석방 후에도 필요한 모든 정신신경적 헬스케어(health care)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적당한 기관과 조정하여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제54조 소년구금시설은 자격 있는 직원에 의해 관리되는 개별화된 약물남용의 예방 및 회복 프로그램을 채용하여야 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소년의 연령, 성별 기타 요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약물 내지 알코올 의존증 소년에게는 훈련을 받은 직원으로부터 해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 의약품은 오직 의학적인 이유에 기초한 치료상의 필요를 위해, 그리고 가능한 경우 당해 소년의 동의를 얻은 후에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나 자백을 획득하거나 처벌, 억

제를 위해 활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소년은 의약품이나 치료방법의 인체실험 대상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모든 의약품의 사용은 항상 자격 있는 의무직원에 의해 인정받아 실시되어야 한다.

I. 질병, 부상, 사망의 통지

제56조 소년의 가족, 후견인 및 소년이 지정한 기타의 자는 청구에 의해, 또는 소년의 건강에 모든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소년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구금시설의 장은 소년의 사망, 시설 밖으로의 이송을 요하는 질병, 48시간을 초과하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의료조치를 요하는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것을 소년의 가족, 후견인,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외국인소년의 경우 이 통지는 그 국가의 영사에게 하여야 한다.

제57조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이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근친자는 사망진단서를 점검하고 사체를 보아 사체의 조치방법에 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다. 구금중인 소년이 사망한 경우 독립된 사인조사가 행해져야 하며, 가장 가까운 근친자는 그 보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사는 소년이 구금시설로부터 퇴소한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사망이 구금중의 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믿음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행해져야 한다.

제58조 소년에게 모든 육친의 사망, 중대한 질병을 가급적 신속하게 알려야 하며, 고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죽음의 병상에 있는 친족에게 갈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J. 지역사회와의 광범위한 접촉

제59조 소년이 외부와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공정하고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사회복귀 준비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소년에게는 가족, 친구 및 신뢰할 수 있는 외부단체 대표와 커뮤니케이션을 갖거나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시설 밖으로 외출하며 교육상·직업상 기타 중요한 이유로 특별한 허가를 받아 시설로부터 외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소년이 복역 중인 경우, 구금시설 밖에서 보낸 시간은 형기에 산입되어야 한다.

제60조 모든 소년은 정기적으로 빈번하게, 즉 원칙적으로 주 1회, 최소한 월 1회, 가족·변호인의 방문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소년의 프라이버시 요구를 존중한 환경에서 이들과 접촉하고 제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류할 권리가 있다.

제61조 모든 소년은 적법하게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주 2회, 자신이 선택한 자와 편지 또는 전화로 교신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 권리를 유효하게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모든 소년은 통신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62조 소년은 신문, 잡지 기타 출판물의 구독, 라디오, TV, 영화의 이용, 소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합법적인 동아리, 단체대표를 통해 정기적으로 뉴스정보를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K. 신체의 억제 및 실력행사의 제한

제63조 제64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구(instrument of restraint)의 사용 및 실력행사에의 의존은 그 어떠한 목적이라도 금지된다.

제64조 계구의 사용 내지 실력행사는 예외적으로 모든 다른 통제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패한 경우, 그리고 법률, 규칙의 명문적이고 개별적인 규정에 의한 수권(授權)에 기초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것은 굴욕이나 퇴폐를 초래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며, 한정적이고도 가능한 한 단기간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단에 호소하는 것은 관리책임자의 명령에 의해 소년의 자상(自傷), 타해(他害) 또는 중대한 기물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다. 이 경우 책임자는 즉시 의무직원 기타 관계직원과 협의하고 상급의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 직원에 의한 무기휴대 및 사용은 소년을 구금하는 어떠한 시설에서도 금지된다.

L. 징계절차

제66조 모든 징계조치 및 그 절차는 안전 및 질서 있는 공동생활이라는 이익을 지키는 것이어야 하며, 소년의 천부적 존엄을 유지하는 데에 적합하고 정의, 자존, 모든 인간의 기본권 존중의 감각을 함양하는 시설 케어의 기본목적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제67조 체벌, 암실(暗室)수용, 엄정독거구금 등 소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처벌을 포함한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품위를 해치는 취급에 해당하는 징계조치는 모두 엄격하게 금지된다. 감식, 가족과의 접촉 제한 내지 거부는 그 어떠한 목적이라도 금지된다. 노동은 항상 교육수단이며 지역사회에의 복귀를 준비하고 소년의 자존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징계적 제재의 목적으로 이를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동일한 규율위반에 대해 1회를 초과해서 제재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집단적인 제재는 금지된다.

제68조 권한 있는 운영기관이 채택하는 규칙들은 소년의 기본적 성격, 수요 및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아래의 사항에 관한 준칙을 확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 (a) 규칙위반이 되는 행위
- (b) 부과되는 징계제재의 종류와 기간
- (c) 그러한 제재를 부과하는 권한 있는 기관
- (d) 불복신청을 재정하는 권한 있는 기관

제69조 위반행위의 보고는 즉시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 기관은 부당하게 지체함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권한 있는 기관은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70조 소년은 유효한 법률 및 규칙의 문언에 엄격하게 기초한 경우가 아닌 한 징계제재를 받지 아니한다. 문제가 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년에게 고지해야 하며, 권한 있는 공평한 기관에의 불복신청권을 포함해 방어를 행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모든 징계절차에 대하여 완전한 기록이 작성 보존되어야 한다.

제71조 소년은 특정한 사회적 활동, 교육활동 및 스포츠활동에서 감독을 맡는 경우나 자치프로그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율유지의 작용(disciplinary function)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M. 사찰과 불복신청

제72조 시설의 관리기구에 속하지 않는 자격 있는 사찰관 또는 정당하게 조직된 동등한 기관은 정기적으로 사찰할 권한 및 스스로의 의사로 시설에 통고하지 않은 채 사찰할 권한이 있으며, 직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사찰관은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이 있는 시설 혹은 그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고용된 모든 사람, 또는 그런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소년 및 그 시설의 모든 기록에 제한 없이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

제73조 사찰기관 또는 공중보건기관에 속한 자격 있는 의무관은 신체적 환경, 위생, 설비, 식사, 운동 및 의료서비스, 그리고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시설내 생활에 관한 기타 모든 측면 또는 조건에 대해 규칙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사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소년은 누구라도 비밀리에 사찰관에게 얘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74조 사찰 종료 후, 사찰관은 관찰한 사항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이 보고서는 구금시설이 본 규칙 및 국내 관련법의 규정에 합치하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들 규칙 등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단에 대한 권고를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소년의 권리 또는 소년구금시설의 운영 관련 범규정에 대한 위반이 발생했음을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사찰관이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은 모두 수사 및 소추 권한을 가진 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75조 모든 소년에게는 구금시설의 장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에게 요망하거나 불복신청을

행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제76조 모든 소년은 인정된 절차를 통하여 중앙관청, 사법기관 또는 기타 적당한 기관에 대하여 내용을 검열을 받지 않고 요망 또는 불복신청을 행할 권리가 있으며 지체 없이 통보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77조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이 행한 불복신청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공평한 문제해결의 달성을 지원하는 독립된 직무를 행하는 사람(옴부즈맨)을 설치할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8조 모든 소년은 불복신청을 행하기 위해 가족, 법적 조연자, 인도적 단체 또는 가능한 경우 기타의 자의 지원을 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문자를 읽지 못하는 소년에 대해 법적 조연을 하거나 불복신청을 수리할 권한을 가진 공적 또는 사적 기관 및 조직에 의한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이 부여되어야 한다.

N. 사회에의 복귀

제79조 모든 소년은 석방 후 사회, 가정, 교육 또는 직장에 복귀함에 있어서 소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조정의 이익을 획득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조기석방을 포함한 각종 절차 및 특별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80조 권한을 가진 기관은 소년이 사회에서 재차 자신을 확립하도록 지원하고 소년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확보하여야 한다. 이 서비스는 사회복귀의 성공을 조성하기 위해 석방시 적당한 주거, 직업, 의복 또는 자기 유지에 충분한 수단을 소년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대표는 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구금중인 소년을 면접하여야 한다.

O. 직 원

제81조 직원은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교과지도원, 직업훈련사, 카운슬러, 사회복지사, 정신과의사 및 심리요법사 등 충분한 수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들 전문가 및 기타 전문가 스태프는 통상 상근직으로 고용되어야 한다. 다만 이 전문가들이 비상근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이더라도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및 훈련 수준에서 보아 적절하고 유익한 경우에는 비상근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라도 괜찮다. 구금시설은 구금된 소년의 개별적인 요구 및 문제에 따라 당해 지역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치료적·교육적·도덕적·정신적 기타 자원 및 지원의 형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82조 구금시설의 적당한 운영은 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인적 적합성뿐 아니라 그들의 성실성, 인간성, 능력 및 소년을 취급하는 직업적 역량에 달려 있으므로, 운영기관은 각 지위 및 형태의 직원을 주의하여 선임 또는 모집하여야 한다.

제83조 직원은 전문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직무에 적합한 남녀를 모집하고 일할 만큼의 충분한 보수를 주어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소년구금시설의 직원은 자신의 직무 및 의무를 인도적·적극적·전문적으로 공정하고도 충분히 수행하고, 소년이 존경받고 또 존경받을만한 방법으로 행동하며, 소년에게 적극적인 역할모델이나 장래의 전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4조 운영기구는 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스태프가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기에 바람직한 조건하에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태프와 운영기구 간의 협력과 함께 소년의 개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 부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각 구금시설에 있어서 직종을 달리하는 스태프 간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는 조직 및 운영의 형태를 도입하여야 한다.

제85조 직원은 직원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아동심리, 아동복지 및 본 규칙을 포함한 인권 및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기준 및 규칙에 대한 연수가 포함된다. 직원은 그 직무를 통해 적당한 간격을 두고 실시되는 실무연수 과정에 참가하여 지식 및 전문능력을 유지·향상시켜야 한다.

제86조 시설의 장은 그 직무에 대한 행정능력, 직무에 적합한 연수 및 경험 등에 충분한 자격을 가져야 하며, 상근직으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7조 구금시설의 직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기본권을 존중하고 또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a) 모든 구금시설의 구성원 또는 시설의 직원은 어떠한 이유나 어떤 상황에서도 고문 기타 어떤 형태의 가혹하고 잔혹하며 비인도적 또는 품위를 훼손하는 취급을 하거나 처벌·교정 또는 직무를 행하거나 용인하여서는 아니된다.

(b) 모든 직원은 그 어떤 매수행위에도 엄정하게 반대하고 투쟁하며, (매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권한을 가진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c) 모든 직원은 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규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믿거나 또는 그야말로 발생할 듯하다고 믿는 모든 직원은, 상급기관 또는 심사 또는 구제 권한을 가진 기관에게 사건을 보고하여야 한다.

(d) 모든 직원은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여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완전한 보호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치료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을 즉시 취하여야 한다.

(e) 모든 직원은 소년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자신의 직무능력의 결과 지득한 소년 및 그 가족에 관한 사항의 모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f) 모든 직원은 구금시설 내의 생활과 시설외 생활과의 차이가 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한 정당한 존중을 약화시키는 경향에 있다면, 그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보고

천주교 소년교도소의 당위성과 모델

이영우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1. 들어가며

2. 왜 소년교도소에 관심을 갖는가?

3. 천주교 소년교도소 설립의 당위성

- 1)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통한 교회의 정체성 확립
- 2) 갇힌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 확산
- 3)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 4) 국가교도소의 변화와 연계

4. 천주교 민영교도소의 모델

- 1) 개별처우 중심의 소규모 교도소
- 2) 가족 가정 회복의 교도소
- 3) 사회복지 심리치료 강화
- 4) 피해자와의 화해 시스템 구축
- 5) 사회복지 시스템의 구축
- 6) 범죄예방 및 상담센터 역할

5. 향후 연구계획

1. 들어가며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제도의 도입목적은 ①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대처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② 교도소 등 운영에 민간의 경영기법 및 회계관리기법 등을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③ 수용자 관리·교화·상담·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민간의 탄력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여 수용자의 처우향상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④ 교도소의 건축에 민간부문 투자 및 참여를 활성화하고 설계·건축·관리에 새로운 접근방식을 접목하여 생산적이고 비용에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민영교도소 제도를 도입한 결정적인 이유는 과밀수용의 해소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과밀수용은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밀수용의 해소만을 위해 민영교도소를 추진한다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민간의 자본을 이용해 새로운 교도소를 신축하지 않고도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쉬우며, 민간의 입장에서는 국가교도소에 수용될 범죄자를 분산해서 수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민영교도소가 국가교도소의 수용자를 분산 수용하는 형식이 된다면 기존의 국가교도소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며, 따라서 굳이 어려움을 무릅쓰고서 민영교도소를 설립할 이유가 없다.

2. 왜 소년교도소에 관심을 갖는가?

흔히들 청소년범죄가 흉악화·흉포화되고 급증하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교화시켜 사회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건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일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는 물론 자기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불우한 가정과 황폐되고 있는 사회에서 성장한 배경을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 또한 피해자이다.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들은 소년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최근 처우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독자적인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성인범죄자를 주대상으로 제정된 행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있으며, 1개

교도소에 700-800명이나 집단 수용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또한 범죄소년들이 일단 소년교도소에 수용되면 가족과 단절되는 경우가 많으며, 출소하여 사회에 나오더라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취업이 어렵고 학업도 계속하기 어려워진다. 가정과 사회의 피해자인 그들이 이번에는 가족으로부터 다시 버림을 받고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점에서는 성인범죄자도 다름이 없지만, 자기판단력과 자기결정의 힘이 충분하지 못한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성인보다도 훨씬 열악하고 불우한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불우한 범죄청소년들에게 구원을 손길을 내밀고 교화시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일은,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사회에 나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3. 천주교 소년교도소 설립의 당위성

그렇다면, 교회가 소년교도소를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은 어디에 있는가?

과거 50년간 가톨릭 교정사목위원회는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교도소·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성인·소년 범죄자의 교정·교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열성적인 교우들의 헌금과 자원봉사자의 헌신 덕택으로, 이제 우리의 교정·교화활동은 교도소의 행형 시스템에서 없어서는 안될 위치로까지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많은 성과도 거두어 왔다. 사실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있어 신앙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민영교도소 제도의 설립·운영이라는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교정사목은 커다란 전환의 시기에 돌입하게 되었다.

소년교도소 설립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통한 교회의 정체성 확립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 역시 거대화되고 물질주의화 되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곤 한다.

우리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소년 교도소에 있는 청소년들이다.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됨으로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를 박탈당한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인으로 낙인찍혀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은 교회나 사회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가 가난한 청소년들을 선택함으로써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고, 꿈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을 찾아주기 위해서라도 소년수들을 대상으로 한 민영교도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2) 간헐인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 확산

과거의 교정사목은 종교의식과 전교라는 제한적인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교도소의 교정시스템 안의 보조자적 입장에 불과했다. 때문에 교정사목을 담당하는 봉사자들로서는 교도소와 교회간에 높은 벽이 있음을 느꼈으며, 지금도 그 벽은 여전히 있다. 또한 신자들 중에서도 교정시설이나 간헐인들에 대한 편견과 불신이 만연해 있다.

그러나 교회가 소년교도소를 설립하면, 교회와 교도소간의 높은 벽을 낮출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우리의 교정사목도 단지 국가교도소 교정행정의 「보조자」가 아닌 「주체자」로서의 위치로 전환되게 된다. 나아가 교도소와 교정사목에 대한 신자들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됨으로써 간헐인들에 대한 편견과 불신의 벽을 낮출 수 있다.

3)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기존의 교정사목은 국가교도소 교정행정의 「보조자」라는 제한된 역할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극적이지 못하였으며 개발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주체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개발은 불가피하게 된다.

민영교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치료 중심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해야 한다. 특히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치료중심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둘 경우 기존의 교정사목에도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어 체계적인 교정사목을 할 수 있게 된다.

4) 국가교도소의 변화와 연계

천주교 소년교도소가 성공을 이루게 되면 국가 교도소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행 형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 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국가가 주도하는 교도소에도 교정. 교화 프로그램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치료와 인성 중심의 교정이 아니라 아직까지 보안중심의 교정시설이고, 대규모의 집단처우를 하고 있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민영교도소가 소규모로 치료중심, 인성교육을 통한 개별적인 처우를 통한 교정. 교화 효과가 성공을 거둔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에도 많은 변화를 줄 수가 있다. 또한 복잡하고 범죄의 유형도 다양한 시대에서 소규모의 치료 중심의 교도소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치료중심의 교정. 교화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면 국가교도소의 연계·협력을 통해 국가가 운영하는 소년교도소와 성인교도소에도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수 있어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4. 천주교 민영교도소의 모델

1) 개별처우 중심의 소규모 교도소

기존의 국가소년교도소가 다수의 수형자를 수용하는 「양떼」 중심의 집단처우를 탈피하여, 천주교 소년교도소는 「한 마리의 양」을 보는 개별처우를 지향한다.

천주교 민영교도소는 과밀수용의 해소라는 효율성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소년수용에 관한 국제준칙과 인권존중을 기준으로 50명 전후의 소규모 교도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2) 가족·가정 회복의 교도소

소년교도소는 가급적 철창 이미지의 교도소에서 탈피하여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교도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대안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점을 결합·조화시키고, 단절된 가족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가정과 연계·협력하여 출소 후 가정을 회복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3) 사회복지·심리치료 강화

청소년이 성장한 가정환경과 사회환경을 조사하여 그들의 비행원인을 모색하고 그것을 활용·적용한 심리치료 중심의 교도소를 지향한다.

사회복지와 심리상담·심리치료를 위해 사회복지학·교육학·심리학 전문가를 활용하고, 그 팀웍을 통해 그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4) 피해자와의 화해 시스템 구축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가해자·피해자 화해시스템을 도입한다.

5) 사회복지 시스템의 구축

출소 후 사회복지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연계를 맺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취업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직업을 알선하고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사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6) 범죄예방 및 상담센터 역할

범죄는 체포·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범죄청소년을 교화하는 교정센터의 역할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청소년과 보호자·가족들이 문제행동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센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5. 향후 연구계획

지난 1년간의 연구는 교회정신에 비추어 어떤 종류의 민영교도소를 설립이 요구되는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오늘 발표한 바와 같은 소년교도소의 설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금년도에는 소년교도소를 전제로 하여,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사회복귀 프로그램, 나아가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양성·교육프로그램의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하여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적으로 민영교도소가 많이 설립되어 있다. 하지만 민영소년교도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천주교 소년교도소가 실현되면 세계 최초인 셈이다.

선례가 없는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도 예상치 못한 시련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뜻을 모아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천주교 소년교도소 사업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며 성공할 것이다.